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0892      |
| 의 퇴 인  | 이수진 의원 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 6. 25. |
| 추 계 번호 | 24B1217      |

#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 및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1,900만원, 2030년 7억 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3억 200만원 (연평균 6억 6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 계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(안 제3조의2 신설) | 619  | 639  | 660  | 681  | 703  | 3,302 | 660 |

- 주: 1.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 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3조의2<br>(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) 신설 |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조의2(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) 신설 | ○    | — 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-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<sup>1)</sup>

#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,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 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 및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임
  -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나, 본 추계서는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

(2024.4. 기준, 단위: %)

|        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명목임금상승률 | 2.9  | 3.4  | 3.2  | 3.2  | 3.2  | 3.2  |

유사 사례(중장년내일센터)를 토대로 산출

- 사 업 명: 중장년내일센터
- 사업개요: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중장년내일센터 지정 및 사업비, 인건비(민간센터) 지원
- 근거법률: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
- 소요재정: 2023년 결산 기준 110억 5,800만원
- 본 추계서에서 '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'에 대한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<sup>2)</sup>의 집행액 중 중장년내일패키지와 중소중견기업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비 등을 제외한 일반관리비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)를 토대로 개소당 지원단가를 산출
  - ※ 일반관리비: 110억 5,800만원<sup>3)</sup>
  - ※ 사업규모: 19개소
  - ※ 개소당 지원단가: 5억 8,200만원
- 2022~2023년 고용노동부의 '중장년내일센터'의 일반관리비가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(2026~2030년)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

□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 및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1,9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33억 2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 계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(안 제3조의2 신설) | 619  | 639  | 660  | 681  | 703  | 3,302 | 660 |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
 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
 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2) 중장년층취업지원(1340-300)의 내역사업

3) 중장년내일센터 공통운영비: 11,058백만원 = 인건비 5,679백만원 (36.63백만원×8.16명×19개소) + 운영비 1,047백만원 + 사업비 4,332백만원

## 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남 희 | 이유미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|
| 남 희 | 02-6788-3737 | nhee@na.go.kr |